

2021년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지원 학교스포츠클럽대회학생심판 양성교육 사업계획서

1 추진배경 및 목적

-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소외되어 있는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해당종목 전문성 향상 및 저변 확대, 다양한 진로모색 기회 제공
- 학생중심의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경기운영 및 심판 교육 실시, 선수 이외의 다양한 스포츠클럽 경험 제공

2 사업 추진방향

- 심판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심판 양성교육**
- 학생심판 양성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운영요원 또는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수증 발급**

3 사업개요

- 사업명: 학생심판 양성교육(학교스포츠클럽대회지원)
- 사업기간: 2021. 5월 ~ 12월 (교육기간: 2021. 7월 ~ 11월 중)
- 사업장소: 교육 희망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
- 종 목: 핸드볼
- 주 최: 대한체육회
- 주 관: (사업참여) 종목단체
-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참가대상: 초(4학년 이상)·중·고등학생

4 종목별 교실 운영 개요

<종목별 교육 기간, 1일당 교육시간, 교육일수, 비교 등 참고하여 신청>

연번	종목	모집 교실 수	1일당 교육시간(A)	교육일수(B)	총 교육시간 (AxB)	비고
-	핸드볼	30	2	10	20	

※ 교실별 교육 운영 세부일정은 종목단체와 협의 후 최종 결정

5 세부 사업계획

○ 희망 학교 모집 및 선정(21. 5. ~ 6. 중)

- 각 지역 교육청을 통한 사업 홍보, 종목단체별 별도 홍보
- 사업 참여 희망 학교는 해당 종목단체에 사업 신청
- ※ (학교 신청방법) 학교별 상단 <IV. 종목별 운영교실 개요>의 종목별 교육 기간, 일수, 시간 등 참고하여 **붙임3의 별첨1~2 신청서(HWP 및 엑셀) 작성 후 해당 종목단체로 기한 내 전자우편 제출(별첨1 종목단체별 연락처 참고)**
- ※ (신청기한) 2021. 6. 18.(금)까지 (단, 등교개학 시기 조정에 따라 변동 가능)

<학교선정 세부 기준>

1. 종목별 최소 참가인원 모집이 가능한 학교(초등학교 4학년 이상, 15명 ~ 20명 이상) *15명 이상인 경우 강습 개설이 가능하며, 20명 이상인 경우 강사 1명 추가 지원
2. 회원종목단체 선발 지도자배치가 가능한 학교
3. 교육에 적합한 장소(실내외 체육시설)를 보유한 학교
4. 학교안전장치(학교안전공제회) 제공 학교
5. 학교장의 의지가 뚜렷하여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생심판의 지속적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학교
6. 기타 회원종목단체 자체 기준 수립 가능

- 해당 종목단체에서는 학교 선정 후 각 급 학교 및 대한체육회 통지

○ 심판교육 강사 선정(21. 6. ~ 7. 중)

- 심판교육 강사는 해당 종목단체별로 지정한 공인심판원이 담당

-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별첨2 참고)
- 선정된 학교의 지역 고려, 활동 가능한 강사 우선 선발

○ 심판강사 교육 실시(21. 7. 중)

- 심판강사 파견 전 심판강사 대상 교육 실시 필수
- 심판 강습법, 성희롱 및 성범죄 예방교육 등
- 교육운영: 중앙종목단체, 장소 및 일자: 종목별로 추후 결정

○ 학생심판 교육 실시(21. 7. ~ 12. 중)

- 학생심판 교육 프로그램(교육내용 및 교육시수 포함) 대한체육회 제출
- 이론 및 실기 교육 실시하되,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실제로 심판(보조심판) 또는 운영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함
- 심판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이수증 또는 심판 자격 수여
- 교육운영: 중앙종목단체에서 파견한 심판강사/ 장소: 교육 참여 학교

○ 안전대책

- 학교안전공제회 활용 또는 종목 단체에서 주최자책임배상보험 가입
 - ※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장범위는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활동에 국한되며, 사고 대상자가 학생이 아닌 강사의 경우 배상이 불가능
-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의료진 및 긴급 안전후송을 위한 구급차 배치
 - ※ 학교장 승인 하에 학교 내 의무실 등 활용가능
-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 및 정부 방역지침 준수하여 운영

○ 학생심판 활용계획 수립(각 급 학교 및 종목단체)

-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실제로 학생심판 또는 운영요원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 제출
- 교내대회 및 학교 대항전, 시·군 지역교육지원청배 대회 등 활용
- 추후 학생심판 운용 실적 제출요청 예정

※ (교육부)2021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p.22) 참고

학생 주도적 운영 지원, 교내리그 심판 등으로 활동 학생 봉사시간 인정 가능

○ 학생심판 교육 현장점검

- 심판강사 교육 및 학생 심판 교육 현장 점검 예정

6 기대 효과

- 학생이 선수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심판, 운영요원으로 참여할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도 상승 및 종목 저변 확대,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활성화
- 학생 체력 및 건강 증진, 다양한 진로 모색의 기회 제공

별첨1 종목단체별 담당자 연락처 (학교별 신청서 접수)

연번	구 분	E-mail	연락처
-	대한핸드볼협회	son.jaeung@handballkorea.com	02-6200-1441